

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11월 29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1월 15일, 정순기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3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11월 29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,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 및 악취실태조사(안 제3조 및 제5조)
-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(안 제6조)
- 지원사업 추진상황 파악을 위한 관리·감독 사항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제정 이유

- 본 조례안은 금천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방지하고 저감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구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2) 주요 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 - 정의(안 제2조) : 「악취방지법」 제2조를 인용하여 규정함
- 구청장의 책무 및 악취실태조사(안 제3조 및 제5조)
 - 구청장 책무(안 제3조) :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규정함.
 - 실태조사(안 제5조) :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·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
-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(안 제6조)
 - 구청장은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
- 지원사업 추진상황 파악을 위한 관리·감독 사항(안 제7조)

다. 검토의견

본 조례안은 금천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쾌적한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음.

따라서 주택가 인근의 음식점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문제에 대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, 「악취방지법」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